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직 제
시 행 규 칙 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호,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 의사지원, 법무, 감사, 정보화, 국제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담당관·심사총괄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개인정보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신기술 대응, 익명·가명처리시 데이터 안전, 자율보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신기술개인정보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조사조정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총괄과·조사1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심사총괄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5.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7.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9.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조정
11.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12. 국회업무보고,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13.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15. 국내 개인정보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6.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17. 위원회 백서 및 공식 발간자료 등의 작성 및 관리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접수·검토 및 보고

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심의·의결 안전에 대
한 접수·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소위원회의 소집, 안전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

6.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호위원회·소위원회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8.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9. 위원회 홈페이지에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안전시스템 관리·운영

11.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및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소관 안건 총괄 조정
4.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5.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6.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8.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9.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11.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2.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3.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 첩보, 언론보도 및
 위원장 등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1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15.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17.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등 정보화 사무의 총괄
19.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0.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1.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관리·운영
 22.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23. 업무포털 등 관리·운영
 24.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5. 위원회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6.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개정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4.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 총괄
 5. 개인정보 관련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련 국가간 인증제도 등 국제표준에 관한 협력
 8.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외국의 개인정보 법령·제도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10.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11.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협상 및 협정 사전협의·체결 지원 및 현황관리

13. 국제협력 관련 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4.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법령에서 위임된 고시 제·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운영

6.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9. 중앙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시·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10.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운
영
 11. 위원회 내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총괄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유리 관련 정책·지침 개발 및 제도 마련,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연간 계획 수립
 16.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
 17.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18. 교육 콘텐츠 보급 및 활용도 평가
 19.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구성·운영 지원
 20.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 정부 운영사이트 교육자료 보급 및 관
리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에 따른 정책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2.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개발·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산업 간 융복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
한 사항
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
적 보호조치 기준 제·개정
8.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2. 금융위 등과의 핀테크 등 금융혁신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의
13. 금융위 등과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 협
의

⑤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익명·가명처리 정책 수립·총괄 및 조정
2. 익명·가명처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제·개정
3. 익명·가명처리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4. 익명·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5. 가명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6. 데이터 유형별 재식별 위험요인 분석
7. 익명·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및 전문가 육성
8.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운영기준 수립 및 추진
9. 전문기관 결합실태 점검
10.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11. 데이터의 결합, 반출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12. 데이터의 결합 운영프로세스 개선
13. 민간기업의 익명·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 실태점검

⑥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율규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운영기준 수립·시행
3. 자율규제 표준지침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보급
4.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의 제·개정 및 시행 지원
5. 자율규제단체연합회 운영 및 자율규제단체 관리·감독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7.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컨설팅, 교육·홍보 및 포상업무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제도 운영
9.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10.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관리
11.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처리 투명성 제고 지원
12.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지·열람·삭제·정정 등의 처리 지원
14. 아동 및 노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
1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실태조사,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인증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술 및 서비스 개발시 개인정보침해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에 관
한 사항

제7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조사1과·조사2과·침해평가과·분쟁
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고시·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인력 교육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점검 총괄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제도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과태료·과징금 제도개선 조사·연구
16.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 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17.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 및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9.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20. 소관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제외,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2.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3.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4.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
 6.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7.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8.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9. 소관 분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0.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2. 소관 분야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3.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3. 상거래기업·법인(정보통신분야)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4.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국외 이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6. 국외 이전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7.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8. 소관 분야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9.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0. 소관 분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1.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2. 소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3. 소관 분야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4.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15.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운영 실태 점검
 16.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실태 점검
- ⑥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지침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심의·의결 안건의 위원회 접수·상정 및 관리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점검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8.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 및 의견제시
9. 침해요인평가 안전 관련 해외법제 검토
10. 침해요인평가 관련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법과 법령 입안에 관한 사항 검토
1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상담

⑦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11.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및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5급6명, 6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1조(평가대상 조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

총계	15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2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일반직 계	149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행정사무관	25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2
행정주사	24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4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
행정주사보	6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운전)	2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비서)	2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1
경정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
행정주사보	1.0

[별표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3명 (4급1, 5급2)	2023년 3월 31일까지
2)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	7명 (4급1, 4·5급1, 5급2, 6급2,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3)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1명 (4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4) 조사조정국 조사1과	5명 (4급1, 6급3,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